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9. 2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98호로 2025년 9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구 역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대내외 환경 변화에 따른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문화국 신설(안 제3조)

나. 주요 정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서 신설(안 제4조의3, 제8조, 제11조)

1)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체육진흥과

2) 장애인 복지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장애인복지과

3) 도시 정비 사업 추진력 확보를 위한 전담부서 신설: 재건축사업과

다.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

1)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안 제4조의3)

2) 어르신·장애인과 → 어르신복지과(안 제8조)

3) 주거사업과 → 재개발사업과(안 제11조)

라.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

(안 제4조의3, 제5조, 제8조, 제11조)

- 1) 미래교육과: 행정국 → 교육문화국
- 2) 문화체육과: 행정국 → 교육문화국
- 3) 보육지원과: 복지국 → 교육문화국
- 4) 교류협력팀: 총무과 → 문화예술과
- 5) 주택사업팀: 주택과 → 재건축사업과
- 6) 동행돌봄팀: 복지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 7) 다문화팀 : 아동청소년과 → 복지정책과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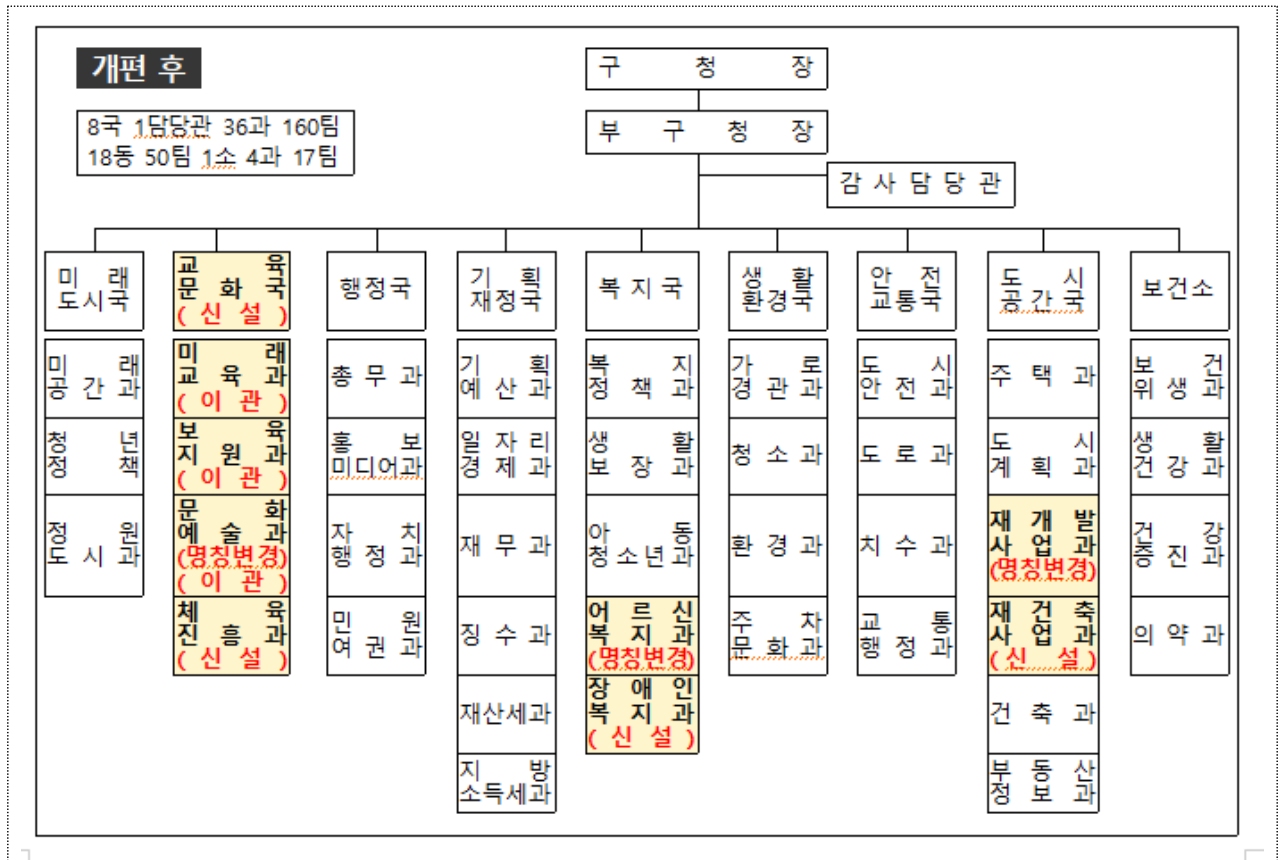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8. 14.~ 9. 3./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7국 1담당관 33과 158팀에서 1국, 3과, 2팀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화는 “교육문화국”과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재건축사업과”를 신설하며, 부서 명칭을 변경¹⁾하고 국별 소관부서를 조정²⁾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제4조는 신설되는 국을 교육문화국으로 하며, 그 하부에 미래교육과, 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를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1)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

- 1)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안 제4조의3)
- 2) 어르신·장애인과 → 어르신복지과(안 제8조)
- 3) 주거사업과 → 재개발사업과(안 제11조)

2)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 (안 제4조의3, 제5조, 제8조, 제11조)

- 1) 미래교육과: 행정국 → 교육문화국
- 2) 문화체육과: 행정국 → 교육문화국
- 3) 보육지원과: 복지국 → 교육문화국
- 4) 교류협력팀: 총무과 → 문화예술과
- 5) 주택사업팀: 주택과 → 재건축사업과
- 6) 동행돌봄팀: 복지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 7) 다문화팀 : 아동청소년과 → 복지정책과

- 안 제4조의3, 제8조, 제11조에서는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재건축사업과가 신설되며, 문화체육과가 문화예술과로, 어르신·장애인과가 어르신복지과로 주거사업과가 재개발사업과로 명칭이 변경되는 내용을 담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국 신설	미래도시국 ▶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안전교통국 ▶ 도시공간국	미래도시국 ▶ 교육문화국 ▶ 행정국 ▶ 기획재정국 ▶ 복지국 ▶ 생활환경국 ▶ 안전교통국 ▶ 도시공간국 교육문화국 :미래교육과 보육지원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부서 신설		·교육문화국 내 체육진흥과 ·복지국 내 장애인복지과 ·도시공간국 내 재건축사업과
부서 명칭 변경	문화체육과	문화예술과
	어르신 장애인과	어르신복지과
	주거사업과	재개발사업과

- 안 제4조의3, 제5조, 제8조, 제11조에서는 부서 업무의 국 이동, 팀 업무의 과 이동, 소관 분장사무의 이동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정함.

구분	업무	변경 전	변경 후
업무 이관	과	미래교육과	행정국
		문화체육과	행정국
		보육지원과	복지국
	팀	교류협력팀	총무과
		주택사업팀	주택과
	업무	통합돌봄업무	복지정책과
		다문화 업무	아동청소년과
		양성평등 업무	보육지원과
			아동청소년과

○ 검토 결과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7국 1담당관 33과 158팀에서 1국, 3과, 2팀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변화는 “교육문화국”과 “체육진흥과”, “장애인복지과”, “재건축사업과”를 신설하며, 부서 명칭을 변경³⁾하고 국별 소관부서를 조정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행정기구 개편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25조 (행정기구와 공무원)⁵⁾에 의하면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작년 3월 개정되어 기존의 실·국 기구 수 상한을 폐지⁶⁾하여 국장급

3) 구민이 이해하기 쉬운 부서 명칭으로 변경

- 1) 문화체육과 → 문화예술과(안 제4조의3)
- 2) 어르신·장애인과 → 어르신복지과(안 제8조)
- 3) 주거사업과 → 재개발사업과(안 제11조)

4)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 이관 (안 제4조의3, 제5조, 제8조, 제11조)

- 1) 미래교육과: 행정국 → 교육문화국
- 2) 문화체육과: 행정국 → 교육문화국
- 3) 보육지원과: 복지국 → 교육문화국
- 4) 교류협력팀: 총무과 → 문화예술과
- 5) 주택사업팀: 주택과 → 재건축사업과
- 6) 동행돌봄팀: 복지정책과 → 어르신복지과
- 7) 다문화팀 : 아동청소년과 → 복지정책과

5)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6)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개정 전

-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기구의 설치를 자율화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⁷⁾에 따르면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도록 되어있기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이번 조직개편은 민선8기의 5차 조직개편⁸⁾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이처럼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행정력의 낭비와 주민들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⁹⁾(기구의 설치 시 고려사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사무의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개정 후

-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7)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1차: 2022년 10월

2차: 2022년 12월

3차: 2023년 6월

4차: 2024년 12월

9)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및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임.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하여 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요건)

- ① 국은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조직이 필요한 경우에 설치한다. 다만, 긴급히 발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 기간 후에 끝나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업무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개정 후

-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인구 30만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9. 2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97호로 2025년 9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행정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직급별 정원표 개정(별표 3)

- 1) 총 정원: 1,499명 (증 7명)
- 2) 일반직 4급: 9명 → 10명 (증 1명)
- 3) 일반직 5급: 67명 → 71명 (증 4명)
- 4) 일반직 6급이하: 1,409명 → 1,411명 (증 2명)

가관별 직급별		총 계	본청	구의회 사무국	보건소	동
총 계		1,499	1,499			
정무직		1	1			
일반직 계		1,494	1,494			
일반직	3급	1	1	-	-	-
	4급	10	8	1	1	-
	5급	71	38	2	13	18
	6급 이하	1,411	1,41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계		4	4			
6급 상당 이하		4	4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5. 8. 14.~ 9. 3./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회의에 동시에 제출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에 따라 국, 과 등을 신설·변경하는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일반직 4급 1명, 5급 4명,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

- 안 별표3의 직급별 정원표를 개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4급 1명, 일반직 5급 4명 및 일반직 6급 이하 2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가 7명 증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검토 결과

-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서도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 및 직급별 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점은 없다고 판단됨.

- 다만, 2024년 3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며 실·국 기구 수 상한(4개이상 6개 이하)이 폐지된 이후에 4급 정원을 증원한 자치구는 우리 구 포함 13개 (강서, 관악, 은평, 양천, 구로, 중랑, 동작, 마포, 동대문, 광진, 서대문, 종로구)이며, 이 중 8명으로 증원한 자치구는 동작, 마포 2곳뿐임을 고려해야 할 것임.

【서울시 자치구 4급 정원 증원 현황】

연번	자치구	4급 정원 현황			비고
		시행령 개정 전	시행령 개정 후	증감	
1	강서구	6	7	+1	
2	관악구	6	7	+1	
3	광진구	6	7	+1	
4	구로구	6	7	+1	
5	동대문구	6	7	+1	
6	동작구	6	8	+2	
7	마포구	6	8	+2	
8	서대문구	6	7	+1	
9	양천구	6	7	+1	
10	영등포구	6	7→8	+1→+2	1차 증원(25.1.)후 2차 증원
11	은평구	6	7	+1	
12	종로구	6	7	+1	
13	중랑구	6	7	+1	

※ 목록 외 자치구는 정원 증원 없음

- 아울러, 동 개정 조례안의 정원 조정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하기에, 신규 부서가 3개 설치되었으나 5급 정원이 4명 증원하는 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¹⁾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며, 2022년 12월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²⁾하여 보통교부세 교부 시 기준인건비 초과액 전액을 페널티로 감액³⁾하도록 하였음.
- 우리 구(區)의 기준인건비 총액은 1,527억원이고, 우리 구(區) 기준인건비 예산 편성액은 1,579억원이며 신규 증원되는 7명의

1) 제4조(기준인건비제 운영)

-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 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수요, 인건비 등을 고려하여 매년 기준인건비를 산정하고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기준인건비의 구성요소, 산정방법 등 기준인건비의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 운영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준인건비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2)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이유 발췌 (출처: 법제처 및 행정안전부)

: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중략)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과 관련된 자체노력 반영 항목에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과 인건비 건전 운영 페널티 항목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출처: 지방교부세위원회, 보통교부세 혁신방안 발표(행정안전부 보도자료, 2022.10.31.)

인건비는 연간 8억 3천만원으로, 개정안에 따른 인력 증원 후에는 예산액 대비 집행액이 더 낮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총 인건비가 기준 인건비를 초과하여 운영될 여지가 있어 보이므로 현재 기준 우리 구(區)는 보통교부세 교부 대상은 아니지만 인건비 집행률이 기준인건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행정안전부 기준인건비 : 152,727,831천원

- 2025년 영등포구 기준인건비 예산편성액: 157,958,095천원

□ 최근 인건비 편성 및 집행액

(단위: 천원)

연도	기준인건비	증감률	편성 현황			기준 대비 본예산 편성률	집행 현황	
			최종예산	본예산	주경 등		집행액	기준인건비 대비 집행률
2025	152,727,831	4.7%	157,958,095	157,958,095	-	103.4%		
2024	145,831,004	3.5%	153,615,940	153,522,090	93,850 (54,766 추경)	105.3%	142,092,540	97.4%
2023	140,897,523	3.3%	140,225,344	139,209,659	1,015,685 (910,126 추경)	98.8%	133,784,480	94.9%
2022	136,323,557	3.22%	133,289,584	132,516,209	773,375	97.2%	128,018,680	93.9%
2021	132,070,648	0.04%	130,342,804	128,599,167	1,743,637	98.7%	122,486,296	92.7%

3 지방재정 건전화

❶ 지자체 인력 운영 효율화	전년대비 인건비를 감축한 ○○시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절감액 등을 기준으로 100% 지원	⇒	기준인건비 대비 인건비 절감 액 등을 기준으로 200% 지원
		16.7억		33.4억 (+16.7억)
	기준인건비를 49.2 억 초과한 △△시	기준인건비 초과하는 경우 에도 페널티 없음	⇒	기준인건비 초과액 전액 을 페널티로 감액
		-		▲ 49.2억 (▲ 49.2억)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1. 집행기관의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2. 삭제 <2020. 3. 10.>
 -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5. 합의회행정기관의 정원
-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도의 5급 이하(시·군·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4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5. 9. 22.

행 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경 과

의안 제599호로 2025년 9월 8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9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부합하는 복지수요를 위해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기존 운영사업의 현행화를 통해 복지
혜택의 정당성과 적용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법률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2조제1호, 제13조)
- 나.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조문 신설(안 제3조제3항)
- 다.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안 제7조)
- 라. 기타 용어 및 표현 정비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 다. 협의사항
 - 1)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 2)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라. 입법예고(2025. 8. 7.~8. 27./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 (2022.1.시행)에 따라 구의회가 별도 기관으로 운영됨에 따른 규정 정비 및 통합운영 규정 신설,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현재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를 통해서 우리 구(區) 직원 후생복지 관련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자 제출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자치법」 제103조1)에 의거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부여하였기 때문에 **안 제2조**의 소속공무원의 정의에서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을 삭제함.
-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1항2)에 의거 **안 제13조**에 구청과 구의회 양 기관의 복지제도 통합 운영의 근거를 신설함.
- **안 제3조**는 후생복지 적용범위 관한 사항으로서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 **안 제7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후생복지사업을 신설(△명절 축하 선물 제공(제4항), △예방접종비

1)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 ① 지방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수는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2) 제77조(능력 증진을 위한 사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지원(제8항))하며, 국가시책사업과 중복되는 후생복지 사항(△만6세 미만 미취학 자녀의 보육료 지원(제6항))을 삭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함.

- 더불어,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기준」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

○ 검토 결과

1)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규정 정비 및 통합운영 규정 신설

-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함에 따라 공무원 후생복지 대상범위에 의회사무국(의회 의원 포함)을 삭제하는 대신 양 기관 간 후생복지 제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규정함.
- 특히 휴양시설 이용, 건강검진 등은 규모가 커질수록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관별 별도 운영에 따른 비효율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 기관 간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여겨짐.

2) 소속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 마련

- 서울시 후생복지운영 조례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규정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별도 규정이 없는 2개(강서구, 관악구) 자치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자치구가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으며 일부 자치구에서는 구체적인 적용 절차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하거나,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등의 단서 규정을 포함함.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내부 운영 기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우리 구(區)에서 근무 중인 기간제 근로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참고로 공무원, 청원경찰은 「영등포구 공무원 고용안정과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 제11조³⁾에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본 조례를 준용할 수 있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음.

3) 운영 중인 후생복지사업의 현행화

- 안 제7조는 현재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후생 복지사업을 반영 하는 등 조례의 근거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 행안부의 지방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업무 운영 기준에 따르면 자율항목 구성 시 복지제도 운영의 효과성과 복지혜택의 형평성을 확보해야 하며,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는 건전한 복지 항목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바, 명절(설·추석)

3) 제11조(후생복지)

-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한다.
- ②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축하선물 제공, 예방접종비 지원 사업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영유아보육법」 제34조⁴⁾에 의하면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은 모두 무상보육 대상이므로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규정은 유지할 실익이 없어 삭제하는 것으로 여겨짐.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한 것이며, 공무원 외 근무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 근거를 신설, 운영 중인 후생복지 사업을 현행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상위법 저촉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됨.

4) 제34조(무상보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에 대한 보육을 무상으로 하되, 그 내용 및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참 고 자 료

1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8., 2021. 10. 8.>

2 지방자치법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서울시 후생복지운영조례 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 적용 현황

연번	자치단체명	적용 내용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2	강남구	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3	강동구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4	강북구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3호의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5	강서구	별도 규정 없음
6	관악구	별도 규정 없음
7	광진구	구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8	구로구	구로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9	금천구	금천구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10	노원구	청원경찰에게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하고, 그 밖에 구에 근무 중인 상근인력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상근인력의 경우는 노동관계법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한다.
11	도봉구	구에 근무 중인 정원 외 상근인력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12	동대문구	동대문구에 근무 중인 자 중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제한적으로
13	동작구	구에 근무 중인 사람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14	마포구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15	서대문구	구에 근무 중인 청원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16	서초구	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직 등 관리규정」에 따른 정원의 상근인력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17	성동구	구에 근무 중이나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연번	자치단체명	적용 내용
18	성북구	구에 소속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
19	송파구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
20	양천구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21	용산구	용산구에 파견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에게도 용산구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22	은평구	구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직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이 경우 노동관계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서 내용으로 한정
23	종로구	청원경찰, 그 밖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24	중구	중구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25	중랑구	중랑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